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 PT심의 결과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의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공 및 전업작가로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2024년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4년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3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행정심의를 통과한 46개 단체 중 PT심의를 통해 최종 2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심의개요

- 심 의 명 :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공모 PT심의
- 심의일정 : 2024. 3. 14.(목) ~ 2024. 3. 15.(금)
- 심의위원 : 내·외부 전문가 5인 (*가나다순)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김정현	독립큐레이터
2	이규식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학예연구사
3	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장
4	조상인	서울경제 백상경제연구원 미술정책연구소장
5	김승연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장

○ 심의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 계획, 구성, 성과 등 공모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운영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단체의 활동 실적○ 신청단체 및 조직의 전문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 선정의 타당성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기획의 참신성○ 작가 홍보·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성과의 기대도 및 파급효과○ 신진작가의 향후 성장 가능성

□ 선정결과 : 총 26개 단체 선정

연번	지원단체명	지원 결정액(원)
1	레인보우큐브	15,000,000
2	맥화랑	15,000,000
3	갤러리소소	45,000,000
4	플랫폼에이	45,000,000
5	상히움	30,000,000
6	띠오	45,000,000
7	청화랑	15,000,000
8	드로잉룸	15,000,000
9	아터테인	45,000,000
10	수호갤러리	15,000,000
11	대구예술창작집단 KNOCK	15,000,000
12	디스위켄드룸	15,000,000
13	써포먼트갤러리	30,000,000
14	뽕뽕브릿지	30,000,000
15	무소속연구소	30,000,000
16	콜론비	15,000,000
17	갤러리코어	15,000,000
18	공간 일리	30,000,000
19	지갤러리	15,000,000
20	뮤트스튜디오	30,000,000
21	캔 파운데이션	30,000,000
22	산목&휘 갤러리	15,000,000
23	이아	15,000,000
24	앨리스	15,000,000
25	갤러리 유	15,000,000
26	인가희갤러리	45,000,000

※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 순번순

○ PT심의 총평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 일부 지원 단체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작가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원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 계획안 등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음. 이처럼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경우 실질적 사업 추진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려내되 지원받을 만한 수준의 작가가 배제되는 사례는 생기지 않게끔 엄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였음.

최근 3~5년 사이 창업한 갤러리(단체)의 신청이 많았으며, 이 경우 본 사업을 통해 해당 신진작가에 대한 홍보마케팅 뿐만 아니라 갤러리(단체)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사하였음.

선정된 단체일지라도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출예산의 항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일부 있음. 이는 해당기관과 선정 단체의 협의를 통해 조정·수정이 필요함.

○ 교부조건 :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 (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

※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단체별 지원 가능한 작가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선정단체 의무사항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집행과정 필수 교육 이수 후 수수료증 제출
- 사업운영시 작가 1인당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 개최 필수
- 「2024 미술시장조사」 응답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사업운영인력 전원)
-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참여작가는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기획 사례비 이외의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선정단체가 운영하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진행할 경우 임차료 지급 불가
-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예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교부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포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2024년 4월 중

관련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02-708-2219 / hyme9@gokams.or.kr